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1998. 9. 23.  
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8년 7월 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1998년 8월 3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59회 임시회 제6차 행정위원회('98. 9. 21) 상정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기획실장 공우홍).

- 가. 제안이유
  - 직제개편('94. 1. 5. 민원관리계 신설)
- 나. 주요골자
  - 위원회의 서기를 감사담당관 “조사계장”에서 “민원관리계장”으로 변경함.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이준석)

동 조례의 개정은 지난 '94. 1. 5.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민원관리계가 신설되므로 인하여 그동안 감사계 소관사항이었던 민원심의위원회를 민원관리계로 그 소관을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, 동 조례안 제9조 2항의 위원회의 간사업무도 민원관리계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, 다만, 동 조례안의 제3조 1항과 제6조 1항의 내용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제6조 1항의 내용을 “제6조(회의의 운영) ①위원회의 운영은 민원사항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”라고 수정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## 4. 수정안의 요지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8년 9월 21일 이종해·위원의 1인
- 나. 수정이유
  - 동 조례안의 체계 및 내용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개정령(대통령령 제15875호) 제5조에 의거 명칭 변경
- 다. 수정 주요골자
  - 동 조례 “제6조(회의의 구성) ①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”를 “제6조(회의의 운영) ①위원회의 운영은 민원사안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”로 수정
  - 제9조 ②항중 “조사계장”을 “민원관리담당주사”로 수정

라. 수정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5. 심사결과 : 수정안 의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에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제3호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1998. 9. 21.  
발의자 : 이종해 위원외 1인

1. 수정이유

- 동 조례안의 체계 및 내용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개정령(대통령령 제15875호) 제5조에 의거 명칭 변경

2. 수정주요골자

- 동 조례 “제6조(회의의 구성) ①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”를 “제6조(회의의 운영) ①위원회의 운영은 민원사안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”로 수정
- 제9조 ②항중 “조사계장”을 “민원관리담당주사”로 수정
- 기타부분은 구청제출 원안과 같음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에대한수정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6조 “(회의의 구성)”을 “(회의의 운영)”으로 한다.

제6조중 “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”를 “① 위원회의 운영은 민원사안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”로 한다.

제9조 ②항중 “조사계장”을 “민원관리담당주사”로 한다.

# 부 칙

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=====

현 행	개 정 (안)	수 정 (안)
<p>제6조(회의의 구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생략</p> <p>제9조(간사) ① 생략</p> <p>② ..... 되고, 서기는 ..... 조사계장이 된다.</p>	<p>제9조(간사) ① 생략</p> <p>② ..... 되고, 서기는 ..... 민원관리계장이 된다.</p>	<p>제6조(회의의 운영) ① 위원회의 운영은 민원사항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</p> <p>② 생략</p> <p>제9조(간사) ① 생략</p> <p>② ..... 되고, 서기는 ..... 민원관리담당주사가 된다.</p>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 안 번호	3
-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1998. 7. 2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가. 직제개편 ('94. 1. 5. 민원관리계 신설)

### 2. 주요골자

가. 위원회의 서기를 감사담당관 “조사계장”에서 “민원관리계장”으로 변경함(안 제9조 ②항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개정근거

1)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직제규칙(별표)

나. 합의사항 : 없음.

다. 예산조치 : 필요없음.

라. 조례(안) : 별첨

첨부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. 끝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②항중 “조사계장”을 “민원관리계장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	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
제9조(간사) ① 생략	제9조(간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..... 되고, 서기는 ..... 조사계장이 된다.	② ..... 되고, 서기는 ..... 민원관리계장이 된다.